제316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서산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 서산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70호)

2026. 10.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전 문 위 원

〈서산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Ⅰ.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제70호

○ 제 출 자 : 서산시장

○ 제출일자 : 2026년 10월 8일

○ 회부일자 : 2026년 10월 13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 서산시가족센터의 위탁 기간(2022. 1. 1. ~ 2026. 12. 31.)이 만료됨에 따라 가족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 위탁에 앞서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위탁 승인 및 의회 동의)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시설개요

- 시 설 명 : 서산시가족센터
- 위　　치 : 서산시 석림1로 85
- 수 탁 자 : (재) 서산시복지재단

- 위탁기간 : 2022. 1. 1 ~ 2026. 12. 31.(5년)
- 위탁시설규모 : 지하1층, 지상3층 / 2,247.26㎡ (680평)
- 위탁시설현황

구 분	면 적(㎡)	세 부 시 설
지하	2,247.26	환경미화원실(1), 창고(2), 서고(1), 방재실(1), 기계실(1)
1층		언어발달교실(1), 동아리실(1), 공동육아나눔터(1), 장난감도서관(1), 수유실(1), 북카페(1)
2층		요리실(1), 다이닝테라스(1), 북카페라운지(1), 사무실/센터장실/회의실/직원휴게실/탕비실(각1), 상담실(2), 다함께돌봄센터(1)
3층		프로그램실(4), 유아쉼터(1), 휴게테라스(1), 옥상

- 공동육아나눔터현황

구 분	면적(㎡)	소 재 지	개소일	비 고
동문동 공동육아나눔터	54.94	서산시 서령로 136, 2층 (서산문화복지센터)	18.3.23.	27.1.1. 폐점예정
성연면 공동육아나눔터	70.5	서산시 성연3로 76, 1층 (힐스테이트 서산 커뮤니티센터)	19.7.10.	
석남동 공동육아나눔터	76.3	서산시 동서1로 130, 2층 (센스빌아파트 관리동)	19.7.24.	
석림동 공동육아나눔터	87.21	서산시 석림1로 85 (서산시가족센터 내 1층)	22.11.28.	

○ 예산지원현황

연도별	계	보조금			비 고
		국비	도비	시비	
2022	2,283,146	924,349	248,819	1,109,978	
2023	2,455,886	982,366	276,082	1,197,438	
2024	4,409,912	2,234,882	488,240	1,686,790	
2025	5,553,749	3,024,133	619,599	1,910,017	
2026	6,636,253	3,800,075	690,586	2,145,592	

○ 위탁추진계획

- 위탁사무 : 서산시가족센터 민간위탁
- 위탁기간 : 2027. 1. 1 ~ 2031. 12. 31.(5년)
- 선정방법 : 수탁자 공개모집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

○ 위탁사무내용

- 서산시가족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
-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가족문화 운동의 전개
-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 상담 등 지원사업
-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일자리 정보제공 및 알선
-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관계·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
-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Ⅲ. 검토의견

1. 제안목적

○ 본 동의안은 기존 서산시가족센터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2027년부터 5년간 가족센터의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근거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제5항 및「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서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 ⑤센터의 운영은 성평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35조의2(가족센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와「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서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16조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 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서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6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시설 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제8조에서 위탁, 재위탁, 재계약의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위탁 승인 및 의회 동의) ① 시장은 제7조의 위탁계획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서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

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 종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민간 위탁 사무의 적정성

-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에서 시장은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위탁할 수 있고
- 같은법 제5조에서는 장애인 등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에 대해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서산시 가족센터의 주요 업무는 가족상담, 가족교육, 돌봄, 다문화가족 지원, 한국어교육, 통역·번역, 가족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가족의 형태와 수요가 다양화됨에 따라 가족지원 서비스의 현장성과 전문성이 중요해지고 있어
- 관련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에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시장은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

제5조(위탁 대상사무) 제4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아동· 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나. 수탁기관 선정방법 및 위탁 기간 적절성 여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제10조에 따르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사무위탁심의위원회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서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역시 위탁 운영 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에 위탁기간이 따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서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6조(위탁운영) ③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며,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사업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Ⅲ. 종합검토

가. 본 동의안은 서산시가족센터의 기존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27년부터 5년간 가족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나.「건강가정기본법」「다문화가족지원법」「서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등에 따라 가족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타당함

다. 또한「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서도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와 장애인 등 복지시설 및 직업훈련과 관련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등은 위탁사무로 정하고 있고, 민간 위탁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동의안은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라. 가족센터는 가족상담, 교육. 다문화가족 지원, 돌봄 및 통역·번역등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됨

마. 상위법령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